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고 병 준 의원)

|          |      |
|----------|------|
| 의안<br>번호 | 25-2 |
|----------|------|

발의연월일 : 2025. 2. .

발 의 자 : 고병준,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장정희,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 1.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 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 3. 관계법령

-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4. 조 례 안 : 불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1. 21. ~ 1. 31.

나. 의견제출: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평 생 교 육 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제7조(위탁 등)

해당 조문은 센터 건립, 위탁, 운영, 전문인력 등과 관련해 비용이 발생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 현재까지 전문 영역이 보편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내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평생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으로 지평을 넓히고자 함.

####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교육체육국 평생학습과 평생교육팀 공태운 |
| 연 락 처  | 02-3153-8975          |